

의안번호	2215484
의 퇴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6. 4. 30.
추 계 번호	25B7142

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버섯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,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판매확대·소비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17억 6,400만원(연평균 43억 5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등 (안 제5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(안 제6조)	450	—	—	—	—	450	90
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7조)	200	1,000	550	600	650	3,000	600
배지의 품질관리 등 (제9조)	200	376	376	376	376	1,704	340
교육훈련 (안 제11조)	1,053	1,053	1,053	1,053	1,053	5,265	1,053
전문인력의 양성 (안 제12조)	518	518	518	518	518	2,590	518
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(안 제16조)	1,100	1,100	1,100	1,100	1,100	5,500	1,100
세계화 촉진 (안 제17조)	631	631	631	631	631	3,155	631
합계	4,252	4,678	4,228	4,278	4,328	21,764	4,352

주: 1.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례 및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관련 사업의 추진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함)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6조(통계작성 및 실태조사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버섯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(제1항)	재량·의무 규정
		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7조(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8조(연구 및 기술개발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1. 종균 개발 및 배양기술의 발전 2. 배지의 품질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 개발 3. 스마트버섯재배의 고도화 4. 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원료 개발 5. 수확 후 배지의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 개발	의무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9조(배지의 품질관리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,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배지에 대하여 제1항의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, 조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배지의 수입·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0조(수확 후 배지의 재활용 촉진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 배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, 사료,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1조(교육 훈련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버섯산업에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9	안 제12조(전문 인력의 양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버섯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0	안 제13조(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11	안 제14조(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·인증취소 및 정기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·취소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2	안 제15조(우선 구매)	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급식재료로 납품하기 위하여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생산되는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3	안 제16조(판매 확대 및 소비촉진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,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4	안 제17조(세계화 촉진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,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버섯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5	안 제18조(생산자단체의 설립)	버섯산업 종사자는 버섯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(이하 “생산자단체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며, 단체의 정관 및 지도·감독·운영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16	안 제2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섯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—	• 미대상: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,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2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•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3	안 제6조(통계작성 및 실태조사)	○	•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4	안 제7조(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	○	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5	안 제8조(연구 및 기술개발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균 개발 및 배양기술의 발전, 스마트버섯재배의 고도화 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,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한 사업계획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대상·기준·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6	안 제9조(배지의 품질관리 등)	○	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7	안 제10조(수확 후 배지의 재활용 촉진 등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확 후 배지를 퇴비, 사료, 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·기준·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8	안 제11조(교육 훈련)	○	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9	안 제12조(전문 인력의 양성)	○	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0	안 제13조(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 및 버섯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11	안 제14조(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)		
12	안 제15조(우선구매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생산되는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우선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13	안 제16조(판매 확대 및 소비촉진)	○	•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14	안 제17조(세계화 촉진)	○	•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15	안 제18조(생산자단체의 설립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버섯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·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16	안 제2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,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
 - 추계기간 중 첫해에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내용	연도	금액
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('24~'28) 수립 기초 연구	2024	10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3]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100	-	-	-	-	100	2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6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버섯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5,000만원(연평균 9,000만원)으로 추계
 - －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연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(5년 주기)

[표 4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실태조사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내용	연도	금액
딸산업 실태조사	2025	45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5] 버섯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버섯산업에 관한 실태조사	450	—	—	—	—	450	9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·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7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중 첫해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, 그 다음 연도에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('27)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200백만원)
 - － ('28) 종합정보시스템 개발·구축(1,000백만원)
- ※ 시스템 설계 및 개발 600백만원, 장비구입 300백만원, 시범운영 100백만원

- ('29)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(550백만원)
※ 인건비 70백만원, 시스템 유지보수 450백만원, 운영비 30백만원
- ('30~'31) 운영 단계에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('30 600백만원, '31 650백만원)

□ 추계 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억원으로 추계됨

[표 6] 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버섯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	200	1,000	550	600	650	3,000	600

주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배지의 품질관리 등(안 제9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¹⁾의 원료,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, 국내에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배지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중 첫해에 제도설계, 기준마련 및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하고, 그 다음 연도부터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
 - ('27) 제도설계, 기준마련 및 시범 운영 등 초기 구축 비용(200백만원)
※ 배지 원료·성분 기준 마련 150백만원,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50백만원
 - ('28~'31)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비용(연간 376백만원)
※ 운영비(360백만원:500점×721천원)+재료비9백만원(시료구입비:500점×18천원)+여비7백만원(국내여비100개소×2명×3회×12천원)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배지”란 버섯 재배 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물질로서 톱밥, 옥수수 속대, 참나무, 곤충 사체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추계 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지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배지의 품질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배지의 품질관리	200	376	376	376	376	1,704	340

주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배지의 품질관리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교육훈련(안 제11조)

-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버섯산업에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버섯산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버섯산업에 특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
 - ※ 이때, 관련 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8] 교육훈련 실시 소요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용	소요예산	비고
교육훈련	• 버섯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	1,053 (매년)	버섯산업에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고,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버섯산업에 특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 필요
	－ 교육비(2천명×44천원×70%)	61 (매년)	
	－ 교육운영비(2천명×27천원×100%)	54 (매년)	
	－ 현장실습교육(1천명×1.34백만원×70%)	938 (매년)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 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2억 6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9]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교육훈련 실시	1,053	1,053	1,053	1,053	1,053	5,265	1,053

주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교육훈련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바. 전문인력 양성(안 제12조)

-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버섯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

※ 이때, 관련 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10] 전문인력 양성 소요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용	소요예산	비고
전문인력 양성	• 버섯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	518 (매년)	버섯 산업은 기술집약 산업으로 연구·재배·유통 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
	－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(2개소×48.8백만원×50%)	49 (매년)	
	－ 현장실습교육 지원 (500명×1.34백만원×70%)	469 (매년)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 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5억 9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1]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전문인력 양성	518	518	518	518	518	2,590	518

주: 1.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사.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(안 제16조)

-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 판로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례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

－ ('27~'31) 버섯 및 버섯가공품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지원(연간 1,100백만원)

※ 버섯 관련 체험·교육(100백만원), 온·오프라인 소비촉진 행사(500백만원), 유통 활성화 지원(500백만원),

※ 이때, 관련 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12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세부내역	2026 예산액
전통발효식품육성 (2832-301) 한국술산업육성	전통주의 계승·발전 및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전통주 산업기반 조성, 전통주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	우리 술 품평회 260백만원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 440백만원 전통주 갤러리 운영 600백만원 재외공관 연계 전통주 홍보 120백만원 전통주 온·오프라인확대 199백만원 전통주 정보 포털 130백만원	1,749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- 추계 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5억원으로 추계됨

[표 13] 버섯 및 버섯가공품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버섯 및 버섯가공품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지원	1,100	1,100	1,100	1,100	1,100	5,500	1,100

주: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례 및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아. 세계화 촉진(안 제1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 세계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, 수출경쟁력 강화, 수출기반 구축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례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
 - ('27~'31) 버섯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(연간 631백만원)
 - ※ 국제박람회(552백만원),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(39백만원), 수출지원사업 운영 및 정보조사(40백만원)
 - ※ 이때, 관련 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14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세부내역	2026 예산
푸드서비스 선진화 (2837-370) 외식산업 수출지원	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맞춤형 바우처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우수 외식기업 글로벌 홍보 및 해외 진출 확대	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672백만원 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360백만원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39백만원 외식수출 지원사업 운영 및 정보조사 40백만원	1,111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- 추계 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1억 5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5] 버섯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버섯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	631	631	631	631	631	3,155	631

주: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례 및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